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5. 1. 21.>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제117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 3.>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제목개정 2023. 1. 3.]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 1. 3., 2025. 1. 21.>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제118조의2(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소

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 3.>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 1. 3.>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1. 3.]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

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2025. 12. 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 3.>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 1. 3.>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2. 2.>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1. 3.]

[시행일: 2026. 6. 3.] 제118조의4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6. 12., 2023. 1. 3.>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

[시행일: 2026. 6. 3.] 제121조의2

**부칙** <제21197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1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0.]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9. 10., 2023. 6. 27.>

1.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9. 10.>

②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10.>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10.>

④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9. 10.>

**제34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

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23. 6. 27.>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9. 10.>

**제35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9. 10., 2010. 5. 4.>

1. 삭제 <2010. 5. 4.>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① 삭제 <2023. 6. 27.>

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9. 10., 2017. 7. 26.>

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2024. 3. 5.>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

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보고)**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립·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수익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3. 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

[본조신설 2023. 6. 27.]

[중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23. 6. 27.>]

**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1.]

[제38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23. 6. 27.>]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본조신설 2020. 8. 11.]

[제목개정 2023. 6. 27.]

[제38조의3에서 이동 <2023. 6. 27.>]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공제운용요강)** ① 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 주무관청의 장이 시·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2. 10.]

**부칙**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176>까지 생략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단 대비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p><b>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b></p> <p><b>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b>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lt;개정 2025. 1. 21.&gt;</p> <p>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b> ① 삭제 &lt;2023. 6. 27.&gt;</p> <p>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 9. 10., 2017. 7. 26.&gt;</p> <p>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23. 6.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li> <li>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li> <li>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b>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lt;개정 2009. 12. 30.&gt;</p> <p>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6. 13.&gt;</p>	<p><b>제34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등)</b> ①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9. 10., 2023. 6. 27.&gt;</p> <p>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p>

	<p>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b>제35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b>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 9. 10., 2010. 5. 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0. 5. 4.&gt;</li> <li>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li> <li>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li> <li>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li> </ol> </li> <li>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li> </ol>
<p><b>제117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b>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lt;개정 2023. 1.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li> <li>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li> <li>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li> <li>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ol> <p>②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p>	<p><b>제3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b> ① 삭제 &lt;2023. 6. 27.&gt;</p> <p>②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 9. 10., 2017. 7. 26.&gt;</p> <p>③ 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23. 6.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li> </ol>

<p>여 관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3. 1. 3.&gt; [제목개정 2023. 1. 3.]</p>	<p>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b>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lt;개정 2023. 1. 3., 2025. 1.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li> <li>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li> <li>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 사업</li> <li>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li> </ol> <p>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lt;신설 2023. 1. 3.&gt;</p> <p>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23. 1. 3.&gt;</p>	<p><b>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b> ① 법 제118조 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23. 6. 27., 2024. 3.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li> <li>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li> <li>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li> <li>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li> <li>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li> <li>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li> <li>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li> </ol> </li> </ol>

	<p>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p> <p>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p> <p>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p> <p>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p> <p>②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p> <p><b>제3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b> 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lt;개정 2023. 6. 27.&gt;</p> <p>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p> <p><b>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보고)</b>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	---

	<p>수립·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p>
<p><b>제118조의2(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b>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 6. 13.]</p>	<p><b>제31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b></p> <p>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lt;개정 2017. 7. 26.&gt;</p> <p>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p> <p>2. 공제사업단장</p> <p>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p> <p>4.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p> <p>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9. 10.]</p> <p><b>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b>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lt;개정 2008. 9. 10., 2023. 6. 27.&gt;</p> <p>1.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p> <p>3.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p>

	<p>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b>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b> ①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lt;개정 2008. 9. 10.&gt;</p> <p>②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③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④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b>제41조(공제운용요강)</b>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9. 10.&gt;</p> <p>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p>
<p><b>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b>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p>	<p><b>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b> ① 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p>

<p>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9. 11.]</p> <p>[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lt;2023. 6. 27.&gt;]</p>
<p><b>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b>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23. 1.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li> <li>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li> <li>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23. 1. 3.&gt;</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p>	<p><b>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b>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lt;개정 2023. 6.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등록증명</li> <li>2. 폐업사실증명</li> <li>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li> <li>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li> <li>5. 표준제무제표증명</li> <li>6.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li> </ol> <p>[본조신설 2020. 8. 11.]</p> <p>[제목개정 2023. 6. 27.]</p> <p>[제38조의3에서 이동 &lt;2023. 6. 27.&gt;]</p>

<p>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23. 1. 3.&gt;</p> <p>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lt;신설 2023. 1. 3.&gt;</p> <p>[본조신설 2020. 2. 11.]</p> <p>[제목개정 2023. 1. 3.]</p> <p><b>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b>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23. 1. 3., 2025. 12. 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li> <li>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li> <li>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li> <li>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23. 1. 3.&gt;</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p>	
--	--

<p>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23. 1. 3.&gt;</p> <p>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lt;신설 2023. 1. 3.&gt;</p> <p>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25. 12. 2.&gt;</p> <p>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25. 12. 2.&gt;</p> <p>[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1. 3.] [시행일: 2026. 6. 3.] 제118조의4</p>	
<p><b>제119조(수급권의 보호)</b>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5. 2. 3., 2018. 6. 12., 2023. 1. 3.&gt;</p> <p>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lt;신설 2018. 6. 12.&gt;</p>	
<p><b>제120조(준비금의 적립)</b>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9조(준비금의 적립)</b>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li> <li>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li> </ol> <p><b>제40조(준비금의 운용)</b>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p>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p><b>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b>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b>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p> <p>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p> <p>[본조신설 2025. 12. 2.] [시행일: 2026. 6. 3.] 제121조의2</p>	
	<p><b>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① 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li> <li>2. 주무관청의 장이 시·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li> </ol> <p>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23. 6.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li> </ol> <p>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24. 3.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li> </ol> <p>[전문개정 2015. 2. 10.]</p>
--	---